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합천군수 귀하

2023년 4월 15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합천군 의회로부터 합천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3월 27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합천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합천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합천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박안나 (인)

위 원 김성만 (인)

위 원 이규학 (인)

위 원 손영진 (인)

목 차

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3
II. 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3
1. 합천군 재정의 개황	3
2. 세입·세출 결산	6
III. 일반회계 결산	8
1. 세입결산	8
2. 세출결산	12
IV. 특별회계 결산	14
1. 세입결산	14
2. 세출결산	16
V. 기금 결산	17
1. 기금조성 총괄	17
2.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19
VI. 재무제표 결산	20
1.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20
2.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21
3.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운영현황	22
VII. 성과보고서	23
VIII. 결산서 첨부서류	25
1. 채권·채무	25
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26
3. 물품증감 및 현재액	26
4. 금고 검사	27
IX. 세입·세출 검사 결과	28
1. 총 평	28
2.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	32
X.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	46

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1.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 여부와 세입의 수납과 과오납 정리, 지출명령의 부합여부, 재정운영의 합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2. 본 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해당 부서간 서류 대조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3. 주요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물품 증감 현재액 등입니다.

II. 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1. 합천군 재정의 개황

가.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포함)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회계	세입	645,847,927	732,391,929	762,078,918	809,047,010	955,548,622
	세출	488,906,487	609,511,033	629,129,880	656,572,671	754,432,253
	결산상잉여금	156,941,440	122,880,896	132,949,038	152,474,339	201,116,369
특별회계	세입	40,491,144	40,377,864	37,350,281	37,223,094	39,860,489
	세출	18,473,308	25,790,613	32,996,715	25,125,070	30,631,412
	결산상잉여금	22,017,836	14,587,251	4,353,566	12,098,024	9,229,077
기금	세입	24,251,416	68,135,871	101,558,619	79,853,074	130,613,709
	세출	930,357	4,265,903	48,335,059	23,807,776	23,312,848
	결산상잉여금	23,321,059	63,869,968	53,223,560	56,045,298	107,300,861
총계	세입	710,590,487	840,905,664	900,987,818	926,123,178	1,126,022,820
	세출	508,310,152	639,567,549	710,461,654	705,505,517	808,376,513
	결산상잉여금	202,280,335	201,338,115	190,526,164	220,617,661	317,646,307

○ **검사결과 분석**

- 합천군의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매년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며, 세출을 주민 수(42,142명)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현 연도 19,182천 원임.
- 결산상 잉여금은 317,646,30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3.98% 증가하였음.

나. **재무제표 요약 분석**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백만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2년	2,658,645	20,543	2,638,102	588,020	782,314	(194,294)	
2021년	2,411,569	15,876	2,395,693	530,038	657,773	(127,735)	
증감	247,076	4,667	242,409	57,982	124,541	(66,559)	

○ **검사결과 분석**

- 2022년 순자산은 2,638,10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42,409백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0.11% 증가하였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총비용-총수익)은 전년대비 66,559백만 원 증가하였음.

다. **지난 5년간 채무 추이**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0	0	0	1,000,000	0	
공 채(b)	0	0	0	0	0	
차입금(c)	0	0	0	1,000,000	0	
채무부담행위 (d)	0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e)	0	0	0	0	0	
채무총합계 (f=a+e)	0	0	0	1,000,000	1,000,000	전년도말 채무 이월

○ 검사결과 분석

- 합천군은 2013년도 채무 제로화를 실현한 이후 2020회계연도까지 채무 제로 재정을 유지하였으나, 2021년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채무가 발생(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2025년 일괄 상환).
- 전년도말 채무 1,000,000천 원이 이월되었음.

라. 재정 건전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합천군 지표	주의 기준	위기 기준	산출 시점
재정 수지	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frac{\text{지출및순융자} - \text{세입}}{\text{통합재정규모}}$	-21.27%	25%초과	30%초과	2022년 결산
채무 관리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frac{\text{지방채무 잔액}}{\text{총예산}}$	0.10%	25%초과	40%초과	2022년 2분기
	③ 채무상환비 비율	$\frac{\text{지방채무 상환액}}{\text{일반재원}}$	0%	12%초과	17%초과	2022년 결산
세입 관리	④ 지방세 징수액현황	$\frac{\text{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133.8%	80%미만	70%미만	2022년 2분기
자금 관리	⑤ 금고잔액 현황	$\frac{\text{당해연도 분기말 잔고}}{\text{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87%	20%미만	10%미만	2022년 2분기
공기 업	⑥ 공기업 부채비율	$\frac{\text{부 채}}{\text{순 자산}}$	1.17%	400%초과	600%초과	2022년 결산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합천군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재정위험 상태가 주의 및 심각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고 있음.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음>(*2022년 당초예산 기준)

$$\text{재정자립도} = 7.98\% \left[\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times 100 \right]$$

$$\text{재정자주도} = 64.05\% \left[\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times 100 \right]$$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2. 세입·세출결산

(단위 : 천 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세 계 잉여금 (가-나)	세계잉여금 처분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995,409,111	785,063,665	210,345,446	51,502,572	41,178,117	64,694,671	10,064,949	42,905,137
일반회계	955,548,622	754,432,253	201,116,369	50,049,442	36,715,734	63,382,353	10,054,385	40,914,455
공 기 업 특별회계	20,674,964	16,163,170	4,511,794	0	4,312,435	0	0	199,359
기 타 특별회계	19,185,525	14,468,242	4,717,283	1,453,130	149,948	1,312,318	10,564	1,791,323

※ 자금 없는 이월액 미포함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수납액 (다)	불납결손액 (라)	미수납액 (나-다-라)	비율(%)	
							징수율 (다/나)	정리율 (다-라/나)
계	전년도	836,904,135	850,920,973	846,270,104	196,464	4,454,405	99.45	99.48
	당해년도	988,688,819	1,003,425,339	995,409,111	369,403	7,646,825	99.2	99.24
일 반 회 계	전년도	800,994,484	813,142,978	809,047,010	196,464	3,899,504	99.50	99.52
	당해년도	946,348,400	960,084,346	955,548,622	369,403	4,166,321	99.53	99.57
공 기 업 특별 회 계	전년도	20,500,524	20,867,989	20,431,847	0	436,142	97.90	97.90
	당해년도	20,952,766	21,946,055	20,674,964	0	1,271,091	94.21	94.21
기 타 특별 회 계	전년도	15,409,127	16,910,006	16,791,247	0	118,759	99.30	99.30
	당해년도	21,387,653	21,394,938	19,185,525	0	2,209,413	89.67	89.67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액 (가)	예산현액 (나)	지출액 (다)	다음연도 이월액 (라)	집행잔액 (나-다-라)
계	전년도	709,191,164	836,904,135	681,697,741	127,114,294	28,092,100
	당해년도	861,718,524	988,688,819	785,063,665	157,375,360	46,249,794
일 반 회 계	전년도	676,265,159	800,994,484	656,572,671	117,129,902	27,291,911
	당해년도	829,362,498	946,348,400	754,432,253	150,147,529	41,768,618
공기업 특 별 회 계	전년도	17,812,598	20,500,524	12,472,282	7,763,899	264,343
	당해년도	13,188,867	20,952,766	16,163,170	4,312,435	477,161
기 타 특 별 회 계	전년도	15,113,407	15,409,127	12,652,788	2,220,493	535,846
	당해년도	19,167,159	21,387,653	14,468,242	2,915,396	4,004,015

※ 집행잔액 내 보조금 반납금 10,064,949천 원 포함

III. 일반회계 결산

1. 세입결산

가. 총괄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가)	실 수 납 액 (나)	미수납액 (가-나)	비 율 (나/가)	
	예산현액					
전 년 도	676,265,159	813,142,978	809,047,010	4,095,968	99.50	
	800,994,484					
당 해 연 도	계	829,362,498	960,084,346	955,548,622	4,535,724	99.53
		946,348,400				
	지방세수입	33,006,000	34,368,393	33,312,536	1,055,857	96.93
		33,006,000				
	세외수입	22,207,697	28,547,213	25,067,346	3,479,867	87.81
		22,207,697				
	지방교부세	432,529,298	437,100,740	437,100,740	0	100.00
		432,529,298				
	조정교부금등	35,171,981	37,524,981	37,524,981	0	100.00
		35,171,981				
	보조금	241,238,141	241,547,514	241,547,514	0	100.00
		241,238,141				
	보전수입등	65,209,381	180,995,505	180,995,505	0	100.00
	내부거래	182,195,283				
지방채	0	0	0	0	0	
	0					

※ 미수납액에 불납결손금 369,403포함

○ 검사결과 분석

-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8.1%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99.5%로 동일함.
- 지방세의 징수율은 96.9%로 전년도 96.7%에 비하여 0.2% 증가함.
- 세외수입 징수율은 87.8%로 전년도 93.6%에 비하여 5.8% 감소함.
-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일치하였음.

나. 지방세 수납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실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비율 (나/가)
전년도		28,484,777	30,617,483	29,604,960	1,012,523	96.69
당 해 연 도	합계	33,006,000	34,368,393	33,312,536	1,055,857	96.93
	주민세	598,000	653,131	640,461	12,670	98.06
	재산세	4,221,000	4,587,758	4,487,239	100,519	97.81
	자동차세	6,495,000	5,740,771	5,617,073	123,698	97.85
	담배소비세	2,891,000	2,883,940	2,883,940	0	100.00
	지방소비세	13,271,000	13,598,700	13,598,700	0	100.00
	지방소득세	5,135,000	6,179,753	5,866,434	313,319	94.93
	지난연도 수입	395,000	724,340	218,689	505,651	30.19

※ 미수납액에 불납결손금 포함

○ 검사결과 분석

- 지방세의 징수율은 96.9%로 전년도 96.7% 대비 0.2% 증가함.
-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1,055,857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함. 국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납기 내 징수 노력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당해연도 징수율이 향상되었음.
- 지방소득세의 경우 조세심판중인 법인의 체납액(2건, 235,804천 원) 과다로 증가함
- 이월체납액 일제정리로 인해 지난년도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증가하였으며, 이월체납액 수납총액은 389,019천 원으로 그 중 과오납액이 170,330천 원으로 실수납액이 218,689천 원임.

□ 최근 3년 지방세 증감분석

(단위 : 천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과오납액	실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액	이월액
2020년	26,188,500	28,770,964	28,278,604	470,913	27,807,691	963,273	36,654	926,619
2021년	28,484,777	30,617,483	30,212,400	607,440	29,604,960	1,012,523	142,371	870,152
2022년	33,006,000	34,368,393	33,727,417	414,881	33,312,536	1,055,857	94,425	961,432

- 전년 대비 지방세 징수결정액 주요증가 요인은 지방소비세(4,023,923천 원 증가)이며, 이외에도 재산세 및 주민세도 일부 증가함.
- 증가 사유는 지방 소비세의 꾸준한 교부액 증가와 누락 세원 발굴 노력에 따른 것임.

다. 세외수입 수납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실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비 율 (나/가)
전 년 도	42,587,708	48,456,495	45,373,077	3,083,418	93.64
합 계	22,207,697	28,547,213	25,067,346	3,479,867	87.81
재산임대수입	388,249	155,193	129,986	25,207	83.76
사 용 료 수 입	2,449,530	3,018,928	2,980,250	38,678	98.72
수 수 료 수 입	2,264,860	2,730,093	2,706,325	23,768	99.13
사 업 수 입	125,300	189,744	189,724	20	99.99
징수교부금	578,819	674,335	674,335	0	100.00
이 자 수 입	1,595,000	2,602,167	2,602,166	1	100.00
재산매각수입	258,800	280,587	280,587	0	100.00
보조금반환수입	2,500,000	2,791,359	2,698,029	93,330	96.66
기 타 수 입	10,035,065	11,876,330	10,894,047	982,283	91.73
지난년도수입	850,000	2,713,631	894,768	1,818,863	32.97
과 징 금	621,700	698,503	515,862	182,641	73.85
이 행 강 제 금	200,000	195,622	165,669	29,953	84.69
변 상 금	46,000	207,571	53,297	154,274	25.68
과 태 료	195,200	299,800	223,616	76,184	74.59
부 담 금	99,174	113,350	58,685	54,665	51.77

※ 미수납액에 불납결손금 포함

○ 검사결과 분석

- 세외수입 전년 대비 징수율은 5.8% 감소하였음.
- 지난연도 수입,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해당 부서의 면밀한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 수립이 요구됨.

라.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미수납액(가)	결손처분액(나)	이월액(가-나)
전 년 도	4,095,968	196,464	3,899,504
당 해 연 도	4,535,724	369,403	4,166,321

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채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 족	기 타
전 년 도	196,464	0	65,268	601	129,977	310	308
합 계	369,403	0	41,251	8,208	87,638	230,917	1,389
지 방 세	94,426	0	7,518	6,829	79,462	617	0
세 외 수 입	274,977	0	33,733	1,379	8,176	230,300	1,389

○ 검사결과 분석

-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미수납 이월액의 사유별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미수납 이월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자금압박	기 타
전 년 도	3,899,504	124,774	10,670	1,406,076	7,455	2,276,034	74,495
합 계	4,166,321	87,676	27,556	1,199,779	7,005	2,446,564	397,741
지 방 세	961,431	87,676	3,040	3,329	0	736,339	131,047
세 외수입	3,204,890	0	24,516	1,196,450	7,005	1,710,225	266,694

○ 검사결과 분석

- 미수납 이월액이 전년대비 6.8%(266,817천 원) 증가하였으며, 징수 불가능액은 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 최소화에 노력이 요구됨.

※ 세금 징수 기동대 등 운영으로 세수 증대에 노력이 요구됨.

2. 세출결산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액 (가)	예산현액 (나)	지출액 (다)	이 월 액 (라)	집행잔액 (나-다-라)	집행률 (다/나)
전 년 도	709,191,164	836,904,135	681,697,741	127,114,294	28,092,100	81.45
당해연도	829,362,498	946,348,400	754,432,253	150,147,529	41,768,618	79.72

○ 검사결과 분석

- 세출예산액(829,362,498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116,985,902천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46,348,400천 원으로 총 지출액은 754,432,253천 원, 집행률은 79.72%로 전년대비 1.73% 감소하였고 미집행 내역 중 이월액은 150,147,52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41,768,618천 원 발생함.

□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계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전 년 도	8,755,372	0	814,171	7,941,201
당해연도	2,252,338	0	822,164	1,430,174

○ 검사결과 분석

-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예산 이용은 없었고,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 전용은 822,164천 원으로, 2021회계연도보다 7,993천 원 증가함. 예산의 이체는 1,430,174천 원으로 전년대비 6,511,027천 원 감소하였음.

□ 예비비 지출현황

-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700,769천 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 원)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3,003,946	2,995,897	2,580,897	415,000	8,049

○ 사업별 내역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 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3,003,946	2,995,897	2,580,897	415,000	8,049
KBS 전국노래자랑 합천편 개최	50,000	50,000	50,000	0	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추가 납부	46,123	46,123	46,123	0	0
서산 균유지 강제집행 비용 예납	536,000	536,000	536,000	0	0
대병면 회양1구 재해 복구	460,000	460,000	45,000	415,000	0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411,000	411,000	411,000	0	0
가뭄대비 용수 공급대책 추진	1,000,000	1,000,000	1,000,000	0	0
모심기 가뭄대비 영농급수 대책 추진	300,000	300,000	300,000	0	0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진(기간제인건비)	38,498	31,709	31,709	0	6,789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진(사무관리비)	5,100	3,840	3,840	0	1,260
산불진화 동원인원 급식비 지급	20,000	20,000	20,000	0	0
울곡면 노양리 산불피해 응급복구(시설비)	128,113	128,113	128,113	0	0
울곡면 노양리 산불피해 응급복구(감리비)	9,112	9,112	9,112	0	0

IV. 특별회계 결산(기타 · 공기업)

1. 세입결산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 납 액 (나)	미수납액 (다=가-나)	비율 (나/가)	
전 년 도	35,909,651	37,777,995	37,223,094	554,901	98.53	
당 해 연 도	계	42,340,419	43,340,993	39,860,489	3,480,504	91.97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 회 계	20,952,766	21,946,055	20,674,964	1,271,091	94.21
	공영개발사업 특별 회 계	60,100	60,424	60,424	0	100.0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 회 계	88,523	112,054	112,054	0	100.00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 계	938,869	934,018	934,018	0	100.00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 회 계	967,680	1,103,390	1,054,989	48,401	95.61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 회 계	3,233,539	2,061,322	2,061,322	0	100.00
	수 질 개 선 특별 회 계	14,798,942	14,996,342	12,835,330	2,161,012	85.59
	농업발전기금 특별 회 계	1,300,000	2,127,388	2,127,388	0	100.00

○ 검사결과 분석

- 특별회계 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2,637,395천 원 증가한 39,860,489천 원이며 수납 실적은 91.97%로 전년도에 비해 6.53% 감소하였음.
- 대부분의 특별회계는 95%이상의 수납률을 보이지만,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수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요인은 세입세출 정리 미흡에 따른 것이므로 신중한 예산 운용이 요구됨.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시효소멸)	이월액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기타
합 계	3,480,504	-	-	-	27,751	3,452,752
상 수 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271,091	-	-	-	-	1,271,091
공 개 발 사 업 계 특별회계	-	-	-	-	-	-
기 초 생 활 기 금 계 특별회계	-	-	-	-	-	-
의 료 급 여 계 특별회계	-	-	-	-	-	-
농 공 단 지 조성사업계 특별회계	48,401	-	-	-	8,069	40,332
하 천 골 재 채취운영계 특별회계	-	-	-	-	-	-
수 질 개 선 특별회계	2,161,012	-	-	-	19,682	2,141,330
농 발 전 기 금 계 특별회계	-	-	-	-	-	-

○ 검사결과 분석

- 미수납액이 2021회계연도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이는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1,271,091천 원)의 경우 상수도 요금 미수납액 286,091천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185억 원) 중 당해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시키지 않은 985,000천 원이 미수납액에 포함된 것임.
-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2,161,012천 원)의 경우에도 당초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교부결정액이 예산조정에 따라 2,122,962천 원이 감액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미수납액에 포함된 것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세입·세출 추계 관리가 요구됨.

2. 세출결산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비 율 (나/가)	
전 년 도	35,909,651	25,125,070	9,984,392	800,189	69.97	
당 해 연 도	계	42,340,419	30,631,412	7,227,831	4,481,176	72.35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 회 계	20,952,766	16,163,170	4,312,435	477,161	77.14
	공영개발사업 특별 회 계	60,100	59,501	0	599	99.0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 회 계	88,523	28,653	0	59,870	32.37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 계	938,869	918,892	0	19,977	97.87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 회 계	967,680	728,289	56,615	182,776	75.26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 회 계	3,233,539	749,004	1,312,319	1,172,216	23.16
	수 질 개 선 특별 회 계	14,798,942	11,278,303	1,546,462	1,974,177	76.21
	농업발전기금 특별 회 계	1,300,000	705,600	0	594,400	54.28

○ 검사결과 분석

- 예산현액 42,340,419천 원에 대한 지출액은 30,631,412천 원이며 집행비율은 72.35%로서 전년에 비해 2.35%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7,227,831천 원을 제외한 4,481,176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음.
-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3개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V. 기금 결산

1. 기금조성 총괄

2022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 원)

종 류 별	전년도말 잔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잔액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56,045,298	74,568,411	23,312,848	107,300,861
합천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26,487,662	50,357,098	20,530,000	56,314,760
합천군 공무 거안정 기금	99,466	68,183	42,637	125,012
합천군 양성평등 기금	516,071	12,786	23,000	505,857
체육문예진흥 기금	3,100,241	29,572	43,500	3,086,313
식품진흥 기금	72,216	27,098	28,983	70,331
중소기업 및 육성 소상공인 기금	2,389,847	666,974	622,744	2,434,077
옥외광고발전 기금	112,300	35,459	63,530	84,229
재난관리 기금	2,304,075	1,857,431	1,919,289	2,242,217
합천군 농축산 가격안정기 물금	20,311,137	1,246,023	0	21,557,160
아동복지 기금	652,283	267,335	39,165	880,453
합천군 청사건립 기금	0	20,000,452	0	20,000,452

※ 기금 설치 목적

종 류 별	근 거 법 규	설 치 목 적	운용관서(설치연도)
			재 원 조 달
합천군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회계,기금,상호 간에 재원을 예 탁·예수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활용	기획감사관(2020)
			일반회계 전입금
합천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합천군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 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	행정과(2011)
			목민관 사용료, 복지 카드 적립금, 이자수입
합천군양성 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주민복지과(2003)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
체육문예 진흥기금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 조례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	체육시설과(1997)
			이자수입
식품진흥 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여 군민건강증진 도모	환경위생과(2001)
			식품위생법 위반업 소 과징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도모	경제교통과(2000)
			일반회계 전입금, 자치 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옥외광고발전 기금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건축과(2009)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재난 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합천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 요인 해소 및 재난대응,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함	안전총괄과(1998)
			자치단체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합천군 주요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 가격 변동에 대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농업유통과(2015)
			일반회계 전입금 등
아동복지기금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증진	노인이동여성과(2019)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합천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 정적인 확보	재무과(2020)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 **검사결과 분석**

- 보유기금은 전년도 말 11종 56,045,298천 원이었으며, 2022연도에는 합천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의 기금조성액 74,568,411천 원 중 23,312,848천 원을 사용하여 2022연도말 현재 107,300,861천 원을 보유하고 있음.
- 11종의 기금 모두 관련 조례와 설치목적에 따라 관리 운용하고 있음.

2.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평균 증가율
전	년	16,238,042	23,321,059	62,574,415	53,223,560	56,045,298	36.3
당	해	8,013,374	44,814,812	38,984,204	26,629,514	74,568,411	74.7
당	해	930,357	4,265,903	48,335,059	23,807,776	23,312,848	123.7
당	해	23,321,059	63,869,968	53,223,560	56,045,298	107,300,861	46.5

○ **검사결과 분석**

- 합천군의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46.5%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는 조성에 비해 사용률 낮고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합천군 청사건립기금의 적립액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됨.
- 확보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내용 발굴은 물론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유사 기금의 통합, 성과 미흡 등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등 재정비가 요구됨.

VI. 재무제표 결산

1.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658,645	2,411,569	247,076	10.25
I . 유 동 자 산	327,519	230,406	97,113	42.15
II . 투 자 자 산	12,231	12,900	(-)669	(-)5.19
III . 일 반 유 형 자 산	128,755	109,031	19,724	18.09
IV . 주 민 편 의 시 설	350,074	294,751	55,323	18.77
V . 사 회 기 반 시 설	1,837,276	1,761,998	75,278	4.27
VI .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790	2,483	307	12.36
부 채	20,543	15,876	4,667	29.40
I . 유 동 부 채	11,851	7,638	4,213	55.16
II . 장 기 차 입 부 채	1,000	1,000	-	-
III . 기 타 비 유 동 부 채	7,692	7,238	454	6.27
순 자 산	2,638,102	2,395,693	242,409	10.12
I . 고 정 순 자 산	2,317,497	2,166,982	150,515	6.95
II . 특 정 순 자 산	106,903	55,496	51,407	92.63
III . 일 반 순 자 산	213,702	173,215	40,487	23.37

○ 검사결과 분석

- 2022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2,658,645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2,411,569백만 원 보다 247,076백만 원(10.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의 증가와 주민편의시설 등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유동자산의 총액은 327,519백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97,113백만 원(10.25%) 증가하였으며, 비유동성자산의 총액은 2,331,126백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149,963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또한, 부채는 20,543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15,876백만 원보다 4,667백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조금반납예정액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유동부채의 총액은 11,851백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4,213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비유동부채의 총액은 8,692백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454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2.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250,137	191,495	58,642	30.62
가. 사업총원가	493,874	439,943	53,931	12.26
나. 사업수익	243,737	248,448	(-)4,711	(-)1.89
II. 관리운영비	74,085	72,057	2,028	2.81
III. 비배분비용	20,061	18,038	2,023	11.22
IV. 비배분수익	11,878	32,686	(-)20,808	(-)63.66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332,405	248,904	83,501	33.55
VI. 일반수익	526,699	376,639	150,060	39.84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194,294	(-)127,735	(-)66,559	52.11

○ 감사결과 분석

- 2022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93,874백만 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43,737백만 원을 차감한 250,137백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74,066백만 원, 비배분비용 20,061백만 원 및 비배분수익 11,878백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32,405백만 원임.
-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526,699백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94,294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127,735백만 원보다 66,559백만 원(52.11%)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수익의 증가가 비용의 증가보다 큰 원인에 의한 것임.

3.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운영현황

<총괄원가계산서>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22년(당기)	2021년(전기)	
급 수 수 익 및 총 괄 원 가	연간생산량(m ³)(A)	5,126,865	4,989,951	
	연간조정량(m ³)(B)	2,559,364	2,511,240	
	급수수익(원)(C)	2,310,333,900	2,424,108,998	
	총괄원가(원)(D)	9,016,330,953	7,868,460,055	
	결함액(원)(E)	6,705,997,053	5,444,351,057	총괄원가-급수수익(E=D-C)
	m ³ 당요금(원/m ³)(F)	902.70	965.3	급수수익/연간조정량(F=C/B)
	m ³ 당원가(원/m ³)(G)	3,522.88	3,133.3	총괄원가/연간조정량(G=D/B)
	요금현실화율(%)	25.62	30.81	m ³ 당요금/m ³ 당원가(F/G*100)
	인상요인(%) (I)	290.26	224.59	(총괄원가-급수수익)/급수수익

○ 검사결과 분석

- 지방상수도의 경우 사용요금은 m³ 당 약902원이고 생산원가는 m³ 당 약3,52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5.62%로 저조한 실정임.
- 사용자 부담원칙과 군민 전체 공익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 및 효율을 검토 바람.

VII. 성과보고서

- 합천군은 본 회계연도의 『희망찬 미래의 합천, 군민과 함께!』라는 비전 및 목표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23개)-정책사업 목표(9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4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부 서 명	성 과 목 표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 성	미달성	달성률
계	23	92	247	24	169	54	78.14
기 획 감 사 관	1	3	7	3	4	0	100.00
미 래 전 략 과	1	7	15	1	12	2	86.67
문 화 예 술 과	1	5	10	1	8	1	90.00
관 광 진 흥 과	1	3	9	0	4	5	44.44
체 육 시 설 과	1	5	7	2	4	1	85.71
행 정 과	1	6	20	3	11	6	70.00
재 무 과	1	2	10	2	7	1	90.00
주 민 복 지 과	1	8	21	0	12	9	57.14
노인아동여성과	1	5	13	0	13	0	100.00
민 원 지 적 과	1	2	9	0	7	2	77.78
경 제 교 통 과	1	7	15	2	7	6	60.00
건 설 과	1	5	9	0	5	4	55.56
안 전 총 괄 과	1	7	13	1	11	1	92.31
도 시 건 축 과	1	7	10	0	8	2	80.00
환 경 위 생 과	1	7	22	2	18	2	90.91
상 하 수 도 과	1	2	3	0	3	0	100.00
농 정 과	1	2	8	2	4	2	75.00
산 림 과	1	2	17	1	13	3	82.35
축 산 과	1	2	11	3	7	1	90.91
농 업 유 통 과	1	1	4	1	1	2	50.00
농 업 지 도 과	1	1	3	0	3	0	100.00
보 건 소	1	2	10	0	6	4	60.00
의 회 사 무 과	1	1	1	0	1	0	100.00

○ 검사결과 분석

- 합천군 전체의 성과 달성률은 78.14%이며 그 중 기획감사관, 농업지도과, 의회사무과는 100%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관광진흥과(44.44%), 농업유통과(50%), 건설과(55.56%), 주민복지과(57.14%) 등은 달성도가 저조함.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그럼에도 목표달성이 쉬운 지엽적인 지표 설정으로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 등이 확인되는 등 불합리한 실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 향후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타당성 있고 측정가능한 측정산식을 설정하여 초과달성(130%이상) 및 미달성(100%미만)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 재정 환류 기능을 높이기 바람.

VIII. 결산서 첨부서류

1. 채권·채무

가. 채권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 해 연 도 말 잔 액
합 계		9,220,627	1,624,231	2,019,574	8,825,284
일 반 회 계		2,972,699	135,022	406,967	2,700,754
특 별 회 계	소 계	6,247,928	1,489,209	1,612,607	6,124,530
	기 초 생 활 보 장	91,138	0	10,180	80,958
	의 료 급 여 기 금	872,905	2,889	2,885	872,909
	농 업 발 전 기 금	5,283,885	1,486,320	1,599,542	5,170,663

○ 검사결과 분석

-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9,220,627천 원에서 당해연도 1,624,231천 원이 발생하고 2,019,574천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825,284천 원을 보유하고 있음.
- 채권은 일반회계 3종(공무원학자금, 소송 공탁금, 기타) 및 특별회계 3종(생활안정자금·농업 용자금, 의료급여부당이득금)으로 총 6종임.

나. 채무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 해 연 도 말 잔 액
합 계		1,000,000	0	0	1,000,000
일 반 회 계		1,000,000	0	0	1,000,000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000,000천 원을 이월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00,000천 원임.

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전년도말 890,513,782천 원에서 당해연도 473,860,303천 원을 취득하고 1,826,698천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362,547,388천 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토 지	: 48,109,438㎡	-----	343,425,419천 원
· 건 물	: 278,221㎡	-----	283,987,363천 원
· 기 타	: 497,361건	-----	355,651,037천 원
· 건설중인재산	: 1,129건	-----	379,483,568천 원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개정에 따른 “건설중인재산” 반영

※ 「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 제정('22.7월)

3.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1,256종 25,866,887천 원이며 당해연도 신규취득 등 1,188,682천 원, 매각·폐기 등 15,019,735천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전년보다 86종 증가하였지만 13,831,053천 원이 감소하여 1,342종 12,035,834천 원임.

4. 금고 검사

□ 현황

(단위 : 원)

구분	세입 결산액 ^㉑	세출 결산액 ^㉒	잔액 ^㉓ =㉑-㉒
합계	995,409,111,019	785,063,665,297	210,345,445,722
일반회계	955,548,621,953	754,432,253,434	201,116,368,519
공기업특별회계	20,674,964,111	16,163,169,545	4,511,794,566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0,674,964,111	16,163,169,545	4,511,794,566
기타특별회계	19,185,524,955	14,468,242,318	4,717,282,63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0,424,159	59,501,000	923,159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12,054,406	28,653,000	83,401,40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34,017,668	918,892,288	15,125,38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54,988,845	728,289,020	326,699,825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2,061,322,360	749,003,980	1,312,318,380
수질개선특별회계	12,835,329,427	11,278,303,030	1,557,026,397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2,127,388,090	705,600,000	1,421,788,090

○ 검사결과 분석

- 금고 검사에 있어서 일반회계 1, 특별회계 8(공기업1, 기타7)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 잔액과 군 금고 출납계산서와 일치함.
- 군 금고의 약정기간은 2022.1.1~2024.12.31.(3년)이며, 매년 금고에 대한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 금고의 지정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과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정하였으며,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별로 구분하여 2개의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BNK경남은행)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IX.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 총 평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총 세입은 995,409백만 원이며,
- 총 세출은 785,063백만 원이며,
- 잉여금은 210,346백만 원이며,
- 순세계 잉여금은 42,905백만 원임.

<세입·세출결산 요약>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입(A)	세출(B)	잉 여 금 (A - B)			
			소 계	이 월 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995,409	785,063	210,346	157,376	10,065	42,905
일 반 회 계	955,549	754,432	201,117	150,149	10,054	40,914
공기업특별회계	20,675	16,163	4,512	4,312	0	200
기타특별회계	19,185	14,468	4,717	2,915	11	1,791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평균증가율	
세 입 (A)	686,339	772,770	799,429	846,270	995,409	9.7	
세 출 (B)	507,380	635,302	662,127	681,698	785,063	11.5	
잉여금 (A-B)	소 계	178,959	137,468	137,303	164,572	210,346	4.1
	이 월 금	100,204	98,462	127,713	126,254	157,376	11.9
	보 조 금실제 반 납 금	2,836	5,370	7,225	4,804	10,065	37.3
	순세계잉여금	75,919	33,636	2,365	33,514	42,905	△13.3

○ 세입결산내역을 분석해보면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1	전년대비(%)	2022	전년대비(%)
계		799,429	846,270	105.86	995,409	117.62
자체수입		53,732	78,700	146.47	62,509	79.43
	지방세	27,808	29,605	106.46	33,313	112.52
	세외수입	25,924	49,095	189.38	29,196	59.47
이전수입		549,490	581,898	105.9	722,479	124.16
	지방교부세	276,644	302,178	109.23	437,101	144.6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241	28,500	100.92	37,525	131.66
	보조금	244,605	251,220	102.7	247,853	98.6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96,207	185,671	94.63	210,421	113.33

- 2022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대비 17.62% 증가한 995,409백만 원으로 이 중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72.58%이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6.27%로 매우 낮은 편임.
- 2022회계연도 자체수입 총액은 62,509백만 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33,31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52% 증가하였음.

○ 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해보면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1	전년대비 (%)	2022	전년대비 (%)
계		662,127	681,698	102.96	785,063	115.16
일반회계		629,130	656,573	104.36	754,432	114.90
	일반공공행정	57,878	52,695	91.04	101,742	193.08
	공공질서및안전	17,337	29,290	168.94	33,213	113.4
	교육	3,470	3,073	88.57	2,098	68.27
	문화및관광	50,810	53,618	105.53	59,910	111.74
	환경	59,370	65,986	111.14	67,401	102.14
	사회복지	110,254	123,856	112.34	123,360	99.60
	보건	9,442	10,388	110.02	12,944	124.61
	농림해양수산	127,386	114,040	89.52	141,523	124.10
	산업·중소기업	11,583	9,056	78.19	8,140	89.88
	수송및교통	36,874	38,997	105.76	40,684	104.33
	국토및지역개발	78,488	88,562	112.84	93,914	106.04
	기타	66,238	67,012	101.17	69,503	103.72
특별회계		32,997	25,125	76.14	30,631	121.92
	공기업특별회계	9,537	12,472	130.78	16,163	129.59
	기타특별회계	23,460	12,653	53.93	14,468	114.35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85,063백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681,698백만 원보다 15.16% 증가했으며, 가장 증가폭이 큰 분야는 93.08% 증가한 일반공공행정 분야로서 타 분야에 비해 증가폭이 매우 높은 편임.
-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에서는 대체로 증가폭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평

- 결산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음. 특히 해당연도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1,000억 원이 증가하여 우리군 예산 1조원 시대가 도래된다는 것은 합천군민의 큰 자부심이 될 것이며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부의 대단한 노력 성과로 보임.
- 반면, 매년 의존재원이 비대해짐에 따라 자체재원 확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성장세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며,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확보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지연 및 무산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월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군민이 누려야 할 복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정책·시책사업의 성과 평가 및 환류(feedback)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에만 안주될 수 있는 기득권 시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취약계층과 미래의 자원인 아동·청년 세대 관련 시책들을 발굴하여 군정에 적극 도입하는 등 희망 합천의 미래를 열어갈 군정에 도전적 재정 투입을 요구함.

2.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

1) 일반·특별회계 세입 추계 등 예산 편성 철저

○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집행잔액(가)	초과세입금(나)	순세계잉여금(가+나)
합	계	36,184,845	6,720,292	42,905,137
일	반 회 계	31,714,233	9,200,222	40,914,455
특	별 회 계	4,470,612	△2,479,930	1,990,682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477,161	△277,802	199,35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99	324	923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59,870	23,531	83,40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977	△4,851	15,126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82,776	87,309	270,085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1,172,216	△1,172,216	0
	수질개선특별회계	1,963,613	△1,963,613	0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594,400	827,388	1,421,788

※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반납금 10,564천 원 미포함

○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3항에 따르면 그 밖의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로 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 위 표와 같이 당초 세입·세출 추계를 과다하게 편성 후 추경 정리를 소홀히 하여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77,802천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851천 원, 하천골재채취 운영특별회계 △1,172,216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963,613천 원으로 마이너스 초과세입으로 기재되어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 및 추계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으로 공공기관 회계질서를 재정립 기하시기 바람.

2) 세입금 환급액 과다 발생 및 과목 착오 기재

○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환 급 액	유 형 별							
		행정기관 착 오	납 세 자 권리 구제	납세자 착 오	차 량, 미등기	국 경 세 정	법령 개정	법 인 정 산	기 타
합 계	1,998,278	32,117	19,751	24,356	91,577	100,264	82	28,189	1,701,942
일 반 회 계	1,912,146	7,009	19,751	5,988	91,577	100,264	82	28,189	1,659,286
특 별 회 계	43,476	25,108	-	18,368	-	-	-	-	-
공기 기업 특별 회 계	42,656	-	-	-	-	-	-	-	42,656

○ 지적사항

- 지방세법 및 개별법에 따라 부과징수한 세입금이 행정기관 착오 등에 의하여 잘못 부과되어 과오납된 금액(1,998,278천 원)을 환급처리 하고 있지만, 납세자 착오 신고 등에 기인한 환급이 아닐 경우에는 행정 신뢰성에 상당한 훼손을 주는 한편,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일반회계 환급액 유형별 중 기타 환급액 1,659,286천 원 중에는 자체보조금 등반환수입 과목이 2022년도에 신설됨에도 종전대로 그외수입과목에 자체보조금반환금 1,162,733천 원 상당 잘못 세입조치하여 실제 환급액보다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잘못된(착오) 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과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는 행정 행위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 납세자의 정확한 권익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과에서 징수까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세입과목 착오 등 오류로 보조사업 등 반납금이 환급액으로 기재되어 향후 결산서가 대내외자료로 활용될 경우 행정 자료의 불신과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부서에서는 당초 세입 조치시 부터 행정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지방세외수입 신규재원 발굴 적극 노력

○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 별	세입 수납총액 (가)	세외수입 수납총액 (나)	비율 (나/가)*100	비 고
2022	995,409,111	29,196,382	2.93%	
2021	809,047,010	45,373,077	5.60%	
2020	762,078,917	20,301,717	2.66%	
2019	732,391,929	24,095,336	3.28%	
2018	645,847,927	26,067,962	4.03%	

○ 지적사항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특색에 따른 순수 자체 재원이므로 신규재원 발굴 의지에 따라 지방재정 주춧돌로 자리 매김이 가능할 것임.
- 지방세외수입이 직전 5개연도 비교 결과 점진적 성장세가 아닌 지속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는 곧 중앙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증가세가 크게 뚜렷해지는 지표이므로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향후 대규모 신규 사업 발주시 합천의 큰 자원인 자연관광인프라를 연계한 유료 관광지 조성, 재산임대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도 사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하여 충분히 검토
-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대회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합천군 자체만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에 의한 지방세외수입 신규 재원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는 곧 부가적으로 지역내 상권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됨.
- 특히 군금고의 이자수입이 2022년도 2,335백만 원의 수익인 것을 보면 군세입에 상당한 세입원이 되고 있음. 군공금 이자수입의 운용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4) 예산 재정 집행률 개선 노력

○ 현황

(단위: 백만 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2022	988,688	785,063	79.40%	
2021	818,891	671,443	81.99%	
2020	810,578	652,658	80.52%	
2019	762,882	628,183	82.34%	
2018	625,197	501,142	80.16%	

○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7조에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성과 단일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필요 불가결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계속비 및 이월 등을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회계연도 독립성의 원칙에 준하려면 계획수립에서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편성한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을 하여야 하나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시책 및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 도내 일부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시군을 제외하고 타 시군들은 합천군과 비슷하게 매년 80% 전후에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연초에 계획했던 부문을 확실히 준비 및 추진하여 군의 정책추진, 군민을 위한 군정, 합천미래를 위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력하여, 매년 반복되는 저조한 재정 집행률을 높임으로써 군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재해(수해·한해 등) 예방 등과 관련한 시기를 일실하면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예산 투입으로 군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5) 예산의 이월·불용액 최소화로 국민 생활 편의 증진 만전

○ 일반회계 현황

(단위: 천 원)

세입 결산 수납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955,548,622	754,432,253	150,147,529	10,054,385	40,914,455
100%	78.96%	15.71%	1.05%	4.28%

○ 지적사항

- 위 표와 같이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다음연도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 수납액 대비 20%를 차지하고 있음.
- 한 해의 세입·세출예산은 매년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하며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면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곧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개선 권고사항

- 당초 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소요 예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 이월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 예산의 누수 없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빈틈없는 예산편성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 아울러, 이월·불용액 평가관리제 도입을 검토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이월·불용액 규모를 파악해 페널티 부과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

○ 현황

- 연도별 반납현황

(단위: 천 원)

연 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가)	반 납 금 액 (나)	비율(나/가)	비 고
2022	301,279,695	10,064,949*	3.34%	
2021	289,435,194	4,804,360	1.66%	
2020	241,752,105	7,140,353	2.95%	
2019	176,868,787	5,200,315	2.94%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30페이지)의 교부차액(56,534천 원) 포함

- 2022연도 과다 반납 사업현황(1억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 서	사 업 명	보조예산	집행액	반납액
노안아동여성과	기초연금 지급	45,474,488	45,281,817	192,671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714,814	497,051	217,763
축 산 과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3,583,300	0	3,583,300
농업지도과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1,567,300	1,022,110	545,190
	기본형 공익직불금	18,900,000	18,609,569	290,431
보 건 소	국가예방접종사업	551,477	204,222	347,225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614,352	253,808	360,544

○ 지적사항

- 위 표와 같이 2022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전년도 대비 109.49% 증가한 100억 원이 반납되어 있음. 주요 반납사유는 지역주민들의 사업 반대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반납금도 여전히 많은 보조사업예산이 반납처리 되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향후 예산 편성전 정확한 수요 예측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 예산 확보후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개별법에 따른 행정절차로 인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시행시에는 그 사업 시행전에 충분히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 없이 예산이 조기집행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또한 주민반대에 따른 사업무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전 예측되는 경우와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공모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

7)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철저

○ 현황

- 2021년 회계연도 자체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점 수	계	90점이상	89~80점	79~60점	59~50점	50점 미만
등 급	5분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 계	378건	72건	140건	146건	0건	20건
성과평가	341건 (100%)	64건 (18.8%)	130건 (38.1%)	129건 (37.8%)	0건 (0%)	18건 (5.3%)
유지필요성 평가	37건 (100%)	8건 (21.6%)	10건 (27.1%)	17건 (45.9%)	0건 (0%)	2건 (5.4%)
평가조치	3분류	계속지원			예산삭감	지원중단

※ 평가대상: 2019년~2021년(3년 단위, 평가 시기 5월말)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성과평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위 표와 같이 2021회계연도 기준 자체 민간보조사업 378건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절차는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이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 특정 보조금 지원단체에 연례 반복적 지원으로 수혜자들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신규사업 추진에 군 재정 사정 등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1차 사업부서, 2차 예산부서의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하여 3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거쳐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지방보조금법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단서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3년 일몰 제도를 과감히 적용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정 필요 조치 및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여 미래지향적 재정 운용을 하시기 바람.

8)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확보

○ 현황

부서수	정책사업 목 표 수	성 과 지표수	성 과 달 성 도		
			초과달성	달 성	미달성
23	92개	247개	24개 (9.72%)	169개 (68.42%)	54개 (21.86%)

- 지방재정법 제5조, 제44조의2 제1항 8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결산보고서의 구성요소로써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방법)은 정책사업목표의 달성 노력을 통한 달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일부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은 정책사업목표와 관련성이 적고, 측정산식을 채택함에 있어 「예산집행률」과 같은 단순한 측정산식으로 채택하여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를 측정하였음.

※ 예를 들어 단순한 측정산식 「예산집행률」을 채택한 성과지표수 52개 정도임.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성과보고서 페이지 483~909 참고.

○ 개선 권고사항

-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타당성 있고 측정가능한 측정산식을 설정하시기 바람.
- 성과보고서 초과달성(130%이상) 및 미달성(100%미만)에 대한 원인분석을 충실하게 하여 재정 환류기능(feedback)을 높이기 바람.

9) 합천군에 맞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노력

○ 현황

-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예산	시행부서	비고
합계	20,700		
수제형로컬푸트청년창업육성	3,000	농업유통과	
위케이션 조성	1,000	산림과	
산림채류형 청년창업센터조성	1,700	산림과	
필드형 기억채움농장조성	3,200	보건소	
청년신혼부부행복주택건설	7,500	도시건축과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건설	3,300	경제교통과	
스마트미래학교조성	800	문화예술과	
합천운석충돌구상징물건설	200	관광진흥과	

- 연도별 인구현황(연말기준)

연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인구수	42,142명	42,935	44,006	45,204	45,916
전년대비 증감	△793	△1,071	△1,198	△712	△1,084

○ 지적사항

- 합천군이 출산율 저하와 인구유출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상위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러한 추세라면 합천군의 존립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할 것임.
- 우리군에서도 인구증가(5만유치)시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위의 표와 같이 매년 인구가 1천 명 전후로 감소하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중앙정부에서 인구소멸 우려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대규모 사업 시행 초기에 있으므로 위의 정책사업이 실질적인 인구 증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면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개선방안을 도입하는 등 모든 가용 행정력을 동원하여 성과 극대화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람.

10) 기금 운영의 적정성 검토

○ 현황

(단위 :천 원)

기 금 명	부 서 명	기 사 용 금 액	당 해 연 도 말 조 성 액	비 고
합 계		23,312,848	107,300,86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감사관	20,530,000	56,314,760	
공무원주거안정기금	행 정 과	42,637	125,012	
양 성 평 등 기 금	노인아동여성과	23,000	505,857	
체 육 문 예 진 흥 기 금	체 육 시 설 과	43,500	3,086,313	
식 품 진 흥 기 금	환 경 위 생 과	28,983	70,331	법정의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 금	경 제 교 통 과	622,744	2,434,077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도 시 건 축 과	63,530	84,229	법정의무
재 난 관 리 기 금	안 전 총 괄 과	1,919,289	2,242,217	법정의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농 업 유 통 과	-	21,557,160	
아 동 복 지 기 금	노인아동여성과	39,165	880,453	
청 사 건 립 기 금	재 무 과	-	20,000,452	

○ 지적사항

-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11개 기금의 총 규모는 1,073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에 비해 큰 편이나,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청사건립기금 등을 제외한 일부 기금의 경우 조성 규모와 연도 말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미비한 상황임.
- 특히,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2022회계연도 기준 1억 원 규모로 타 기금 대비 조성규모가 현저히 작아 기금운용 실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양성평등기금은 2022회계연도 사용액이 전년도말 조성액 516,070천 원 대비 4%에 해당하는 23,000천 원을 사용을 하였으며, 아동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52,282천 원 대비 6%에 해당되는 39,165천 원 사용을 하는 등 당 초 설립 목적과 다르게 사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개선 권고사항

- 기금은 조성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기금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라,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나 기금 상호간 유사·중복 설치된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함에도,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만 존치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동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 현시점에서 기금 설치목적과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거나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정비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비 편성 비율, 집행률 등을 검토하고,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할 것을 요구함.

11) 아동복지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방안 마련

○ 현황

(단위: 천 원)

연도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2022	652,283	228,170	880,453
2021	412,011	240,271	652,283
2020	-	412,011	412,011

○ 지적사항

-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19.12.12.시행)에 따르면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 기금의 용도를 보면 특성교육,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저소득 아동지원,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중위소득 70%미만 아동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택시비 지원사업 및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천군 1일 출산률 0.26명 및 아동비율(18세미만, 7.2%)을 감안하여 볼 때 지원대상자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금액적, 의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당해 기금사업이 시행된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실체적 목적사업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초 설치 목적과는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판단됨.

○ 개선 권고사항

- 당해 기금의 당초 설치 목적을 다시 살펴보고 필요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 범위 제한 요인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관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복지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더욱 명확히 하시기 바람.
- 또한 회계연도마다 매년 비슷한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머물지 말고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용역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합천군 아동실태, 복지실태 등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극 활용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람.
- 합천군의 미래이며 크나큰 자산인 젊은 인재육성 차원에서 보다 파격적인 시책추진으로 밝은 미래의 합천을 건설하시기 바람.

12) 공유재산대장과 회계결산서 간 불일치 재산 현행화 만전

○ 지적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우리군은 동일한 공유재산에 대해 활용 목적, 시스템 관리 미흡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새올시스템)과 결산서상 금액 차이 발생으로 적정 재산 관리가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전국 '18년 공유재산 총 규모가 관리대장은 740조 원이나, 회계결산서 상은 798조 원으로 58조 원 차이가 발생

- 이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 차원의 공유재산대장과 결산서 간 회계 적합성 필요가 대두되어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범위) 및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건설중인 재산” 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공유 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 을 제 정(2022. 7.) 하여 적정 재산 관리를 도모하도록 전파하였음.

(단위: 백만 원)

구 분	전 년 도		현 년 도		비 고
	건 수	가 격	건 수	가 격	
합 계	534,021	890,513	536,163	1,362,547	
토지	35,886	315,358	36,740	343,425	
건물	875	223,112	933	283,987	
기타	497,260	352,043	497,361	355,652	
건설중인재산			1,129	379,483	

○ 개선 권고사항

- 「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 에 따라 공유재산대장 등록 자료 와 회계결산 자료간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합천군 “건설중인재산” 을 실 물 재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과 함께, 이중 재산 및 누락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또한, 공유재산의 가치 평가 및 대장 등록의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유재산의 신뢰성을 재고하여 합천군의 전략적 재산관리 및 정확한 운영방 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X.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

1.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철저

가. 전년도 권고사항

- 지난 연도 보조금 미수령액 25,339,539천 원은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수납하여야 하나 그외수입으로 수납하였음.
- 교부 통지된 지방교부세 6,990,362천 원을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미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잉여금이 과다발생 하였음.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회계과목을 정확하게 부과하여 세입 처리하였으며, 그외수입 부과 최소화로 세입을 더욱 투명하게 하였음.
-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여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교부 통지된 의존재원은 추경에 적극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하였음.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철저

가. 전년도 권고사항

- 2021회계연도 과오납 환급액 3,596,348천 원 중 행정기관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이 2,051,724천 원으로 과오납 환급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 미수납액 2,507,918천 원 중 납세태만이 1,123,681천 원으로 미수납액의 44.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시 부과과목·부과대상·부과금액·납기일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과처분 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과오납이 없도록 노력하였음.
- 체납액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납세태만 등 납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반드시 징수 하도록 노력하였음.

3.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강구

가. 전년도 권고사항

- 부서에서 정한 성과 지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작년 대비 괄목할만한 달성률을 기록함 (70% 미만 달성률 13개 과 → 6개 과)
- 작년대비 목표한 성과를 넘어 초과 달성한 부서도 있지만, 미달성 부서가 여전히 존재.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2021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서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많았음.
- 매년 예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서 자체적으로 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별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예산의 효과 목표 미달성 부서에 대한 부서별 지표 및 목표치를 재검토하고, 향후 사업별 지표 설정 시 적정여부를 재평가하고 분기별로 목표 달성치를 점검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예비비 예산 집행 철저

가. 전년도 권고사항

- 예비비 사용 결정 후 미집행으로 지출결정액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 존재.
- 예비비 지출액(4,982,773천 원)이 지출결정액(6,352,142천 원) 대비 78.4%로 미흡한 수준임.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과거 대비 코로나19와 관련한 민생 관련 예비비 편성으로 그에 따른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등)
-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출결정액 대비 지출액의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음.

5. 특별회계 세출분야 예산집행 미흡

가. 전년도 권고사항

- 예산현액 35,909,651천 원에 대한 이월액은 9,984,392천 원이며 이월액이 예산 현액 대비 27.8%로 높은 수준임.
- 특히, 이월액이 높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과 홍보 및 조기 사업추진 등 이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수질개선 특별회계】** 특별회계도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고 있음.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시행 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음.
- 연중 누수탐사용역, 노후 급수관로 교체공사, 노후관망관리(현대화) 사업 등 상수도 기반 사업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음.
-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죽고지구 하도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17년 이후 계속해서 상부기관과 장기간 협의로 인하여 공사 발주 등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22년 소규모환경평가(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에 따라 금년 하반기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발주 등을 통하여 선금 집행 등 예산 집행에 노력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하겠음.
-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2021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생활안정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 지원 등) 50,000천 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146,000천 원 및 기타 운영경비(내부거래 지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예비비) 27,92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용자 수요가 없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일부 집행곤란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67,651천 원 발생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타 특별회계에 비해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 이월액은 0원으로 예산집행률은 높다고 판단됨. 집행잔액 35,318천 원은 국도비반환금 등으로 현재일 기준 반납처리 완료됨

6. 보조금 실제 반납액 과다 발생

가. 전년도 권고사항

- 2021회계연도 보조금 반납금은 작년 대비 40% 감소한 48억 원이 반납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이 반납처리 되고 있음.
-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따라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함에도 실제 소요액 보다 많이 편성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국도비 보조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고 있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 수립과 신속집행을 통해 집행되지 않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음.
- 예산 편성 시 담당 부서별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 불용 및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7. 예산대비 전액 미집행으로 예산운영 비효율

가. 전년도 권고사항

-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하여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전체가 불용 된 점은 적절치 못한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2021년 2회추경 시 집행 불가능한 사업 등을 구조화하여 삭감하고 재투자하는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민원발생,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시행 여부 및 사업비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불가 등으로 불용이 예상될 시 추경에서 정리하여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8. 민간보조사업 예산 미집행으로 예산 효율 저하

가. 전년도 권고사항

- 민간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사전에 보조사업의 규모, 시기, 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 보조사업 집행 불가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 지체 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하여 예산의 집행과 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출잔액이 발생하게 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민간 보조사업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보조사업의 규모, 시기, 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겠음. 또한 보조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보조사업이 시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겠음.
- 보조사업 집행 불가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 차순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타당한 보조사업자가 없을시 지체 없이 추경 예산에 감액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9.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철저

가. 전년도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면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 된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중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년도 결산기준 전년도말 현재액 2,637,446천 원은 현재까지 이월된 현금으로 채권자가 분명한 자금은 반환 조치, 그 외 자금은 세입 조치하여야 함에도 장기 보관 관리.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위해 철저한 조사 및 고시 공고를 통해 반환 조치 또는 세입조치를 적극 노력하겠음.
- 세입세출외현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여 미반환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보관금에 대해서는 정기에금 가입 후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음.
-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직속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확인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10.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

가. 전년도 권고사항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554,901천 원으로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436,142천 원,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9,728천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240천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4,209천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9,582천 원에 이르고 있음.
- 체납 사유로는 무재산, 납세태만 등이 있음.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2021. 12월 미상환 용자금 관리방안 개선으로 세외수입시스템에 등록된 미수납액을 일괄 정리(삭제)하고 이호조 시스템 ‘채권’으로 관리 중이나, 시스템 오류로 미수납액 19,728천 원이 삭제되지 않았음. ⇒ 현재 세외수입시스템상 미수납액은 없으며, 이호조시스템 채권으로 관리중인 미상환 용자금은 91,138천 원임.
- 해당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하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대부분 정부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경제활동이 저조하여 용자금의 일시 상환 또는 조기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상생활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매월 일정금액씩 용자금 상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수납액도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기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현금급여비 보조금 교부액(10,175천 원)은 국도비 교부결정 시 초과(착오) 배부에 따른 금액으로 현재일 기준 반납 조치 완료(반납일자 2021.10.19.)
- 무재산으로 분류된 5,065천 원의 경우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부과 및 고지를 하였으나 환수 대상자의 미수납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임.
- 대상자에 대한 꾸준한 납부 독려(전화, 방문상담 등)와 성실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022년 5월 4일 현재기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체납현황(2021회계, 결손 제외)은 6개 업체 36,376천 원임.
- 3개 업체(체납액 35,351천 원)는 현재 폐업한 상태
- 폐업한 업체의 경우 재산 압류 등 다방면으로 독촉 중이며, 일부 폐업한 업체의 경우 압류재산이 경매 배당금 부족으로 결손처분할 예정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3개 업체(체납액 1,025천 원)는 단순체납 상태
-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 독촉 중이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재산압류 및 배수정지처분 등)를 통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음.

-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과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요금미 2021년 까지 총136,109천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함
- 납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단순 체납과 함께 사망,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액이 장기간 누적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평소에도 납부자들에 대하여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 전화 및 방문납부 독려, 고질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단수 및 폐전), 체납자 재산압류,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신청 독려 및 결손처분 적극 실시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11. 특별회계 운영 검토

가. 전년도 권고사항

-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2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 하였으나 최근 2019, 2020년 운영 실적이 없는 상태로 예산만 확보한 상태임.
- 특별회계의 목적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존속·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여 재정비 할 것을 권고함.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사용을 위해 2013년 신설되었음.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대단위 지역발전 사업추진이 어려웠고 특별회계 집행도 미흡하였음.
- 그러나, 함양-울산 고속도로 개통과 남부내륙고속철도 확정 등 우리군의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대규모 국책사업 및 민선8기 주요사업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이런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음.
- 또한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대규모 사업비와 5년~10년 장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사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5년 정도의 중기적 관점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연계하여 미집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12. 특별회계 용자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

가. 전년도 권고사항

- 특별회계 용자금 채권 미수납액에 대해 세외수입 미수납액으로 관리 하는 등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함.

구 분	건 수	미 상환액	비 고
기 초 생 활 보 장 기 금 특 별 회 계	15건	91,138	
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	21건	872,905	
농 업 발 전 기 금 특 별 회 계	22건	120,815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채납자 중 사망, 경제적 납부능력 상실, 소재과약 불명으로 인한 장기 채납자 다수(2009년 이전)
- 채납자 및 보증인 재산압류(기완료)로 매년 채납금 지속적 납부 추진 2018년 10,918천 원, 2019년 305천 원, 2021년 6,913천 원
-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 2021. 12월 ‘미상환 용자금 관리방안 개선’에 따라 ‘채권 미수납액’으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발생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의 경우 전국적으로 2019년 5월 기준 5,569억(보건복지부 추산)으로 의료급여 재정에 상당한 해악을 미치고 있음. 우리 군 또한 이에 대한 채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임.
- **【의료급여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경우 872,905천 원 중 사무장병원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부당이득금이 799,760천 원, 상해요인 부당이득금이 73,145천 원으로 구분됨.
- 향후 아래와 같이 미수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로 미수납액의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13. 기금 예산 효율화 사업 발굴

가. 전년도 권고사항

- 전체 기금 적립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는 조성액에 비해 사용률이 낮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적립액이 높기 때문임.
- 특히 아동복지기금 등 확보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함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이미 시행중인 사업은 수혜자 확대에 노력하겠음.
- 기금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불필요한 자금을 최소화하고, 집행계획 분석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